

CHANGE!

# 학칙 개정안

-제 1회 학생총회-

청주대학교 제48대 체인지 총학생회

- 01 학생준수내규
- 02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규정
- 03 장학금급여규정
- 04 청주대학교 총 동문회 장학규정
- 0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규정
- 06 청석 장학회 규정

- 07 체육특기자관리규정
- 08 학생 공가처리에 관한 내규
- 09 청대언론사규정
- 10 총학생회 회칙
- 11 청주대학교학칙
- 12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13 폐과에 대한 학칙 발의

## 제2장 학생증

### ※ 제4조 (학생증 제시)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며 본교 관계 교직원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학생은 교내외에서 학생증을 휴대하며 본교 관계 교직원으로 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 제6조 (학생증 소지)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수강, 시험, 도서열람을 불허한다.

→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수강, 시험, 도서열람을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 ※ 제9조 (참가허가)

학생으로부터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변경 2009.2.10.)

→ 학생으로부터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에게 신고를 해야한다.

※ 제10조 (참가금지): 국제운동경기 및 국내주요경기 이외에는 시험기간중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 (응원금지): 학생은 학생처장의 허가없이 대외운동 경기에 단체로 응원할 수 없다. (변경 2009.2.10)

※ 제12조 (출전금지): 학생은 학생처장의 허가없이 교외 단체 운동선수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변경 2009.2.10)

※ 제14조 (뺨지패용): 본교 학생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본교 지정 뺨지를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장 운동경기 참가

## 제4장 복 장

제정 1982. 3. 1  
변경 2012. 11. 20

## 제5조

(승인)

- ① 제4조에 의한 단체 신청을 마친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변경 2009.2.10)
- ②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는 학칙 제63조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변경 2009.2.10)

- ① 제4조에 의한 단체 신청을 마친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
- ②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는 학칙 제63조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

## 제7조

(지도교수)

-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에게 추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변경 2009.2.10)
-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승락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9.2.10)

-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취임보고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재정)

- ①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변경 2009.2.10)
- ② 단체지원을 위한 학교보조금은 매학기 학생처장이 판단하여 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변경 '99.3.30, 2009.2.10)

- ① 단체의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의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단체지원을 위한 학교보조금은 매학기 운영위원회가 판단하여 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 제9조

(단체의 활동)

- ② 모든 행사는 제11조에 의한 집회 허가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변경 2009.2.10.)

- ⑦ 집회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팸플렛, 피켓 기타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대학장의 사전지도와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제작인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변경 2009.2.10)

- ② 모든 행사는 제11조에 의한 집회 허가원을 학생처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 ⑦ 집회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팸플렛, 피켓 기타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대학장의 사전지도와 학생처장에게 보고 후 제작인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 ⑧ 모든 게시물은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게시판에 부착하되 게시판의 규격에 맞게 2매 이내로 부착한다.

- ⑨ 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종료시까지에는 각 단체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

## 02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규정

### 제10조

(행사·집회계획서 제출)

- ① 학부(과) 단위의 학생행사는 학생 대표가 행사·집회계획서를 학부(과)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 ② 대학단위의 학생행사는 해당 학생회장이 행사·집회계획서를 학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

### 제11조

(집회허가원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 ① 단체의 정기(월례 및 주례) 집회는 단체 등록시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집회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 ⑤ 다른 학교와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15일전에 행사내용 설명서, 예산서, 참가동의를 그리고 홍보를 제작 배부허가원을 첨부하여 집회허가원을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 교내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

(간행물의 발간허가 신청)

- ① 본 대학교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은 인쇄물 발간허가원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9.2.10)  
→
- ① 본 대학교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은 인쇄물 발간허가원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단체의 자격상실)

- ① 등록된 단체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학생지도위원회와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단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통·폐합할 수 있다.  
→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통·폐합할 수 있다.

### 제19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제1장 총칙

### ※ 제2조 (급여대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본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하고 성적이 양호한 자
3. 성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국가 또는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및 그 직계자녀
5.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
6. **거타 총장이 지정하는 자**

### ※ 제3조 (장학금의 종류와 급여액)

장학금의 종류와 급여액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변경 2002.10.2)

→

**장학금의 종류와 급여액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측 위원과 학생측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제3조의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급여지침)

①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 선발 및 급여지침을 별도로 둔다.**

# 03 장학금급여규정

## 제2장 장학생의 선발

※ 제5조 (선발)

① 장학생 선발은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장학생 선발 및 급여지침에 의거 학생처장이 선발한다.

## 제3장 장학위원회

※ 제11조 (장학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③ 장학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③ 장학위원은 학교측 위원과 학생측 대표가 협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4장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 제15조 (장학금의 지급)

① 본 대학교의 각종 장학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장학생 선발 및 급여지침에 의거 학생처장이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학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혜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변경 2002.10.2, 2009.2.10)

→

① 본 대학교의 각종 장학금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장학생 선발 및 급여지침에 의거 학생처장이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학위원회와 총장, 학생측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혜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 15조

본회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입학생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가.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나. 기타 총회의 결의로써 인정한 자



본회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입학생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가. 품행이 방정하고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 나. 기타 총회(임시,정기,학생총회)의 결의로써 인정한 자
- 다. 입학함으로써 학교 이미지 발전에 기여한 자

## 제2장 학생지도위원회

### ※ 제3조 (구성)

① 학생 지도 및 포상과 징계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총장, 대학본부 처장, 단과대학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교수 약간명으로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처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단, 부총장 궐위시 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변경 '99.3.30, 2010.2.23)

→

① 학생 지도 및 포상과 징계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총장, 대학본부 처장, 단과대학장, 총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교수를 약간명으로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처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단, 부총장 궐위시 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 ※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생 지도에 관한 기본 방침
2.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3. ~~학생 단체의 조직 및 집회에 관한 승인~~
4. ~~학생의 모든 정기, 비정기 간행물에 관한 승인~~
5. ~~학생회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규정

## 제2장 학생지도위원회

※ 제6조 (위임) 총장은 경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처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 (지도교수) 학생회 활동 및 각종 단체와 각종 간행물 발간에 대한 지도를 위해 총장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 05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규정

## 제4장 징계

※ 제12조의2 (징계의 발의)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02.4.8, 변경 2009.2.10)

1. 징계의결 요구서 1부.
  2. 본인 진술서(경위서, 반성문) 1부.
  3.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학과장) 의견서(상담지도보고서, 경우에 따라 생략 할 수 있음) 1부.
- ② 2회 이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처장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의결 요구서 1부.
  2. 본인 진술서(경위서, 반성문) 1부.
  3.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학과장) 의견서(상담지도보고서, 경우에 따라 생략 할 수 있음) 1부.
- ② 3회 이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제14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주 이상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단체를 조직하여 허가 없이 집회를 한 자**

※ 제1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2주 이상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유인물 및 플래카드 등을 붙이거나 배부한 자**

## 제 2장 기구 및 기능

### ※ 제6조 (이사회회의 구성)

② 이사는 청석학원 이사장이 학원이사 2인을 지명하고 총장이 3인을 지명한다. 다만 청주대학교 학생처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변경 2009.2.10)

→

② 이사는 청석학원 이사장이 학원이사 2인을 지명하고 총장이 3인을 지명한다. 지명 완료후 학생 대표를 포함하여 투표 끝에 결정한다.

## 제 3장 선수관리

### ※ 제10조 (대회참가)

각종 대회에 참가할 경우에 각부의 감독은 참가 2주일 전에 대회참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생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3조 (훈련시간)

각부의 훈련시간은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사정에 의하여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4조 (선수진료)

② 공상여부의 인정은 학생처장이 하며, 공상의 진료는 학교의 지정병원에서 치료하여야 한다.(변경 2009.2.10)

→

② 공상여부의 인정은 학생처장이 하며, 공상의 진료는 학생이 병원 선택후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 제4조 공가대상

공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였을 경우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훈련에 참가할 경우
3. 학생단체 여행 및 연수 규정 제3조에 의해 여행허가가 결정되었을 경우
4. 대학전체, 단과대학, 학부(전공, 학과)의 공식 행사에 참여할 경우
5. 학생처장 또는 소속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공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였을 경우
2.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훈련에 참가할 경우
3. 학생단체 여행 및 연수 규정 제3조에 의해 여행허가가 결정되었을 경우
4. 대학전체, 단과대학, 학부(전공, 학과)의 공식 행사에 참여할 경우
5. 학생처장 또는 소속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6. 학생총회가 개최될 경우

## 제 2장 조직

### ※ 제5조 (청대신문사)

- ② 발행인은 총장으로 한다.
- ③ 편집인은 발행인이 교원중에서 임명하며 발행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④ 논설위원은 발행인이 교원중에서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⑥ 학생편집국장, 부장, 기자는 본교 학생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

### ※ 제6조 (청대타임즈사)

- ② 발행인은 총장으로 한다.
- ③ 논설위원은 발행인이 교원중에서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편집국장, 부장, 기자는 본교 학생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발행인이 임명한다.

### ※ 제7조 (청대교육방송국)

- ② 총국장은 총장으로 한다.
- ④ 정국원은 1학년 재학생으로 3개월간의 수습을 마친 수습국원을 주간의 추천으로 총국장이 임명한다.(변경 2011.4.21)

→

- ② 총국장은 총장으로 한다.
- ④ 정국원은 1학년 재학생으로 3개월간의 수습을 마친 수습국원들 중으로 총국장이 임명한다.

# 09 청대언론사규정

## 제 2장 조직

### ※ 제8조 (위원회)

- ① 청대신문사와 청대타임즈사에 ~~논설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주간으로 하고,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청대 교육방송국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주간으로 하고,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 3장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

### ※ 제10조 (임면)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은 품행이 방정하고 언행이 건실한 재학생중에서 전형을 거쳐 청대언론사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 제11조 (의무)

- ①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은 재임기간 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 ②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은 성실하게 학보 및 타임즈 발간과 교육방송 업무에 임해야 하며, 청대언론사 주간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③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은 ~~청대언론사 주간의 승인 없이~~ 학생회 간부 등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

# 09 청대언론사규정

## 제 3장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

※ 제12조 (징계)

학생기자 및 방송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대언론사 주간이 근신을 명하거나 그 직의 해임을 총장에게 제청한다.

1. 법령과 학칙을 위반할 때
2. 이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세칙을 위반한 때
3.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

## 제 3장 총대의원회

### ※ 제18조 (업무 및 권한)

총대의원회는 아래와 같이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3. 회계업무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권 (단, 감사는 정기·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13. 회계업무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권 (감사는 정기·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단, 총대의원회의 회계업무 및 사업전반에 대한 보고감사건은 임시총회에 둔다.)

## 제 3절 시험과 성적

### 제54조 (성적분류)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며 D° 이상을 급제로, F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  
단, 성적의 세부구분과 F급에 해당하는 성적처리 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변경 2001.11.13., 2014.9.19.)

등급	실점	평점	비율	등급	실점	평점	비율
A <sup>+</sup>	95-100	4.50	20%	C <sup>+</sup>	75-79	2.50	40%
A <sup>°</sup>	90-94	4.00		C <sup>0</sup>	70-74	2.00	
B <sup>+</sup>	85-89	3.50	30%	D <sup>+</sup>	65-69	1.50	10%
B <sup>°</sup>	80-84	3.00		D <sup>0</sup>	60-64	1.00	
				F	0-59	0.00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하며 D° 이상을 교수 재량으로, F급 이하를 낙제로 한다.  
단, 성적의 세부구분과 F급에 해당하는 성적처리 방법은 교수가 정한다.

등급	실점	평점	비율	등급	실점	평점	비율
A <sup>+</sup>	95-100	4.50	20%	C <sup>+</sup>	75-79	2.50	50%
A <sup>°</sup>	90-94	4.00		C <sup>0</sup>	70-74	2.00	
B <sup>+</sup>	85-89	3.50	30%	D <sup>+</sup>	65-69	1.50	
B <sup>°</sup>	80-84	3.00		D <sup>0</sup>	60-64	1.00	
				F	0-59	0.00	

## 제5장 시험및성적

### 제16조(성적평가)

####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담당교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변경 2004.8.27)

#### ② 학업성적의 평가 요소별 비율은

담당교수가 평가 목적에 맞게 정한다.  
(변경 2004.8.27)

③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평가할 수 있으며 6~8호는 평가 비율을 A등급 35%, B등급 40%로 제한한다.

1. 현장실습(교직, 교외)

2. ROTC군사학

3. 외국인학생의 교과목

4. 교양영어회화 AP(고급반)

5. 교양선택(토익)

6. 전공의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7. 영어 특별강좌

8. 외국인교수가 강의하는 전공 교과목

## 제 2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변경 2011.9.27)
- ② 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학생위원은 전체 의원의 3/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변경 2011.9.27.)
- ③ 교직원 위원은 부총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변경 2011.9.27)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학생위원은 전체 의원의 4/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교직원 위원은 부총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총장과 학생 측 대표가 협의 하에 임명한다.

## 13 폐과에 대한 학칙 발의

**목적: 폐과에 대한 학칙이 정해지지 않아 폐과 통보 후 학교의 일방적인 운영내규를 통해서 재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에 발의함**

1. 학과 폐과는 학과 재학생들과 협의 하에 폐지학과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될 수 있다.
2. 학과 폐과는 마지막 재학생이 졸업하면 이루어진다.
3. 폐과 전 남아있는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4. 폐과 전 공간조정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재학생수가 20명 이하일 때, 학교 와 재학생과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다.
5. 수강 신청의 경우에는 재학생들이 신청하고 싶은 과목을 존중한다. 따라서 전체 학년 수업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1명이 수강을 원한다 해도 개설할 수 있다.)



**거꾸로가는 학교행정  
여러분이 바꿔주십시오**